

진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진안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안군의회의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시험일정

□ 채용분야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부서	직무내용
정책지원관 (행정)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3명	2년 (주40시간)	의회 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및 시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및 자료 작성 등 지원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면접시험		임용점검*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3.11.10.(금) ~ '23.11.20.(월)	'23.11.21.(화) ~ '23.11.23.(목)	'23.11.28.(화) 예정	'23. 12. 6.(수) 예정	산약초타운	'23. 12. 13.(수) 예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4조의2(23.6.13. 신설), 「진안군의회 인사 규칙」제16조 - 각종 공고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a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2.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역·성별)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인 사람(2003.12.31.이전 출생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문을 사전에 별도 확인 할 것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자격기준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p>[공통요건 충족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실무경력]</p> <p>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기업체, 정당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u>행정, 법무, 예·결산, 회계, 감사·조사, 정책개발, 분석 등</u>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 명시)</p>

-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및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미제출 또는 불명확한 경력증명서 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전임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 주 35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기타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21.(화) ~ 11. 23.(목) 18:00까지 / (3일간)
- 접수처 :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대상자는 사전 연락 요망)
 - 접수시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활용한 접수처리 불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수수료 : 7,000원(지방행정주사보)
 - (납부방법) 진안군 수입증지 날인(방문),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우편접수 시 반드시 사전 연락)
- ▷ 주소 : 우)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의회 의정팀
- ▷ 우편접수자는 SMS로 접수현황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연락처 : 063-430-8924)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현금동봉 불가함)
- ※ 진안군 수입증지 미제출(접수 무효처리) 및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통보 및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가방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이 담긴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시험 평정항목 ① ~ ⑤ 순에 따라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진안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추가합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

5.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09:00 ~ 18:00)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진안군의회 복무 조례」 준용

□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64,776	46,006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3×4cm) 1매 이메일 제출(saverstar@korea.kr)
 - 응시수수료 : 진안군 수입증지 7,000원(6·7급 : 7,000원)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업자 성명, 취업자 인이 있어야 함
 - ※ 지원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본인이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관련분야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각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수)을 반드시 첨부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에 한하여 기제출한 서류로 같음 함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요망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가능(단, 원본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수 있음(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 반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 한정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진안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an.go.kr>)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으로 문의(☎ : 063-430-8924)

붙임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첨부).